

2017년도 의왕소방서 종합감사 결과

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7. 9. 7. ~ 9. 13.(5일간)
- 감사분야 : 2014년 8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
- 감사결과

감사결과			처 분 계 획						
			행정상(건)		신분상(명)			재정상(천원)	
행정상	신분상	재정상	시정	주의	징계	경고	주의	회수	과태료
12건	10건(17명)	4건(5,570천원)	5	7	-	4	13	70	5,500

II 주요 지적사항

○ [인사·행정] 교육훈련성적 평정 부적정

- (전문교육성적 평정 부적정) 전문교육 과정중 집합교육(3일 이상)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의 7시간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- 지방소방☆ ○○○는 “소방시설(전기)” 전문교육 과정을 2017.02.20. ~ 2017.02.24.(5일) 수료하였고, 이 집합교육 이전에 입교전 사이버교육(‘17.01.16. ~ ’17.02.10.)을 이수하였다. 집합교육과 혼합한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7시간으로 하여 시간당 0.04점씩 산정하여 0.28점으로 평정하여야 하며,
- 따라서, 지방소방☆ ○○○의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은 소방시설(전기) 1.40점, 입교전 사이버교육 0.28점, 기타 사이버교육 0.5점(최대 0.5점)으로 합계 2.18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1.90점으로 잘못 평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,
- 지방소방☆ ○○○ 또한, “소방시설(기계)” 전문교육 과정을 2016.10.17. ~ 2016.10.21.(5일) 수료하였고, 이 집합교육 이전에 입교전 사이버교육(‘16.09.12. ~ ’16.10.07.)을 이수하였다.

집합교육과 혼합한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7시간으로 하여 시간당 0.04점씩 산정하여 0.28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0.25점으로 잘못 평정하였다.

따라서, 지방소방☆ ○○○의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은 소방시설(기계) 1.40점, 입교전 사이버교육 0.28점, e교육학 사이버교육 0.25점으로 합계 1.93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1.90점으로 잘못 평정하는 결과를 초래.

- (사이버교육 평정 누락)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(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)은 과정당 0.25점으로 평정하되, 평정점은 0.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- 지방소방☆ ◇◇◇ 포함 29명은 2017.05.01. ~ 2017.05.31. 동안 “사이버청렴교육” 및 “성희롱 예방교육” 2개 과정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, 2017.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시 교육훈련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**각각 0.5점의 사이버교육 점수를 평정에 누락.**

❖【관련규정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(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)

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(전문교육 평정)

○ [예산·회계]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가격 비교검토 소홀 등

- (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비교견적 소홀)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,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에 있어서는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는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,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·공표한 가격, 감정가격,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,
- “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” 건에 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견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특정업체로부터 타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최종 계약금액(4,956,600원 : 한국전기안전공사)으로 결정하는 등 **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 견적조사 업무를 소홀히 함.**
- (기명날인 규정 위반)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(서장 또는 과장)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에도,
- “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” 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기명날인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계약업무 실무담당자가 관인을 사용하여 용역계약 체결.

❖【관련규정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(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)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(수의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)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(수의계약 운영요령)

○ [재난대응·안전]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훈련 미 실시

-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,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 의왕소방서에서는 2015년 긴급구조훈련 기본계획(현장대응단-961호[2015.02.17.])을 수립하면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능력 향상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훈련(가상상황 토의형 도상훈련)을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는데,
- 현장대응단 구조업무 담당자 지방소방☆ ○○○ 등 2명은 2015.4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의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.

❖【관련규정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(재난대비훈련)

○ [예방·민원]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

- 도 재난예방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「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」을 각 서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였고, 이에 따라 의왕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부속실·발코니 형태의 비상구 165개소에 대하여 경고표지 및 안전로프 설치 여부 파악 등 전면적 재확인을 4개월간(2017.6.1.~9.30.) 추진하면서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시설 누락·변경(훼손 등) 대상은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는데도,
- “●●●● 2호점(일반음식점)”의 비상구 현지 확인 시, 2층 비상구 문을 당기는 문으로 변경(훼손)하였고, 발코니를 임의 확장(76.29㎡)하여 주방 및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,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.

❖【관련규정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) 및 시행규칙 제9조(안전시설등의 설치·유지 기준)

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(도 재난예방과-4389호, 2017.05.29.)

수범사례 1 전통시장 「스마트 화재대응 시스템」 구축 운영

□ 추진배경

- 최근 전통시장에서 다수의 화재 발생(여수, 대구) ⇨ 대형 재산피해 발생
- 화재 발생 육안 확인, 초기 신고 지연 ⇨ 골든타임 초과, 대형화재로의 확산
- 발화위치, 확산상태, 발원지 확인 불가 ⇨ 신속정확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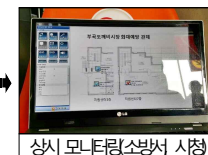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

① 「전통시장 스마트 화재통보 시스템」 구축

- 지역안전대책협의회 주요안건 상정 ⇨ 시·소방서 공동구축 합의
- 전통시장 내 ‘각 점포’ ⇨ 화재 감지기 설치(불꽃·열·연기 복합)
 - 화재발생 ⇨ 불꽃, 온도, 연기(3중 감시센서) 조기 감지 ⇨ 관리자 통보
 - 화재감지시 소방서 상황실, 시청 상황실, 시장 고객센터 동시 상황전파
 - 관계자 ⇨ 화재발생 상황 휴대폰 전송에 따른 신속한 초기소화활동 전개
- ※ 소요예산 : 80,000천원(시 예산), 2017. 2. 28현재 시범 운영 중



점포별 화재감지기 설치



상시 모니터링소방서 시청



점포별 업주 문자통보



화재감지 현장출동

② 전국 최초 전통시장 내 ‘말하는 소화기’, ‘말하는 비상소화전’ 설치

- 소방시설 사용법 음성 안내 ⇨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
- 설치개수 : 말하는 소화기 16대, 말하는 비상소화전함 1개소



‘말하는’ 소화기



‘말하는’ 비상소화전



시장상인 사용법 교육



언론보도

□ 기대효과

- 화재 발생 조기 감지 및 초기 소화활동으로 ‘대형화재 발생 ZERO화’ 실현
- 발화점 추적 및 화재 진행상황 실시간 추적에 의한 ‘효율적인 화재진압’
- 전통시장 화재발생 방지에 따른 ‘대형 인사사고’ 및 ‘대규모 경제적 손실 예방’

수범사례 2 「긴급 소방활동정보카드」 자체제작 활용

□ 추진배경

- 재난현장의 정확한 정보전달 제공체계 미흡 ⇨ ‘신속·정확한 정보제공’
- 소방시설 불량 신고 절차 홍보 부족 ⇨ 개방된 신고 SYSTEM 구축

□ 추진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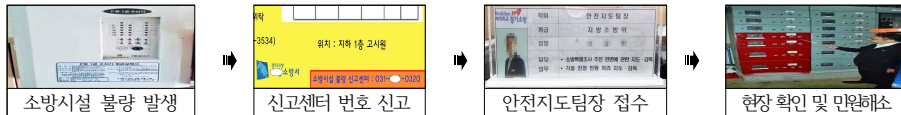
-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취약 정보의 신속 제공 ⇨ ‘효율적인 소방 활동 전개’
- 취약 층 평면도 및 피난약자 등 주요정보 활용 ⇨ ‘현장대응 적정성 확보’
- 민원처리부서 담당팀장 핫라인 번호 기재 ⇨ ‘원스톱 민원신고 창구 구축’

□ 주요내용

- 특정소방대상물 「긴급 소방활동정보 카드」 자체제작(스티커) 활용
 - ‘현장 진입 전’ 카드 내 숙박자 등 취약정보 확인 ⇨ ‘현장진입 및 소방 활동’
- ※ 긴급 소방활동 정보 ⇨ 피난약자, 숙박자, 소방시설(수신기 등), 비상연락망 등



- 「원스톱(ONE-STOP) 민원신고 창구」 안내
 - 소방시설 불량 신고 번호 :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장 내선번호



- 소방안전관리대상물(3급 이상) 부착 및 배부 완료
 - 총 701개소(1급대상 21, 2급대상 459, 3급대상 221)
- 현재 출동대원 「긴급 소방활동 정보카드」 현장 활동시 활용 중

□ 기대효과

- 대상 처 주요 정보의 신속 제공을 통한 ‘현장대응의 적정성’ 담보
- 소방시설 불량 적극 신고를 통한 ‘소방시설 불량률 Zero화’ 실현
- 대상처 방문 시 주요 변경사항 확인·수정을 통한 ‘소방대상물 관리’ 철저